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윤석열 인

2024년 6월 4일

국무총리 한덕수

국무위원
환경부장관 한화진

●대통령령 제34546호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 제4호의 감면 대상란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란 바목 중 “600억원”을 각각 “1,000억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서 1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